

-직원 품위유지 위반 행위-

특정감사 결과보고서

☐ 감사기간: 2015. 5. 7. ~ 5.12.(4일간)

☐ 감사인원: 2명

☐ 지적사항: 1건 (징계 1)

--

목 차

I. 조사실시 개요	1
1. 조사배경 및 목적	1
2. 신고개요	1
3. 조사기간 및 인원	2
4. 조사 중점사항	2
II. 조사결과	3
1. 조사결과	3
2. 조사자 의견	3
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	3
1. 처분요구 현황	3

[붙임]

1. 감사결과 처분 요구

I. 조사실시 개요

1. 조사배경 및 목적

- [배경] 공사의 직원인 ○○○과 신고인 본인의 아내가 메신저(카카오톡)로 부적절(저급)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조사 요청
- [목적] 공사 직원과 신고인 아내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등 직원 품위 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에 목적을 두었음.

2. 신고개요

- [신고일자] 2015. 5. 4.(월)
- [이해당사자]
 - 신고인: 전남 ○○시 거주 ○○○
 - 피신고인: ○○지역본부 ○○○○○○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

○ [신고내용]

- 신고인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
 - 신고인의 아내와 메신저(카카오톡)로 부적절(저급)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음.
 - 메신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음.
 -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처벌 바람.

3. 조사기간 및 인원

- [기간] 2015. 05. 07.(목) ~ 05. 12.(화)/ 4일간
- [인원]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,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

4. 조사 중점사항

- 메신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

- 메신저를 주고 받은 기간
- 서로의 동의하에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인지 확인
- 신고인 아내와의 관계

II. 조사결과

1. 조사결과

- 신고인의 아내가 약10년 전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때 알게 된 사이로 약 6개월 전 우연히 메신저(카카오톡)를 통해 연락이 되어 지난 애기와 안부를 묻는 등 연락을 하면서 지내온 사이임.
-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허물없이 친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저급한 농담이 오갔으며 그 과정 중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음.
- 메신저 대화내용 및 사진에 대해 상대방도 거부의를 밝히거나 싫다고 표시하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됨.
- 메신저 대화내용 및 문답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2. 조사자 의견

- ○○지역본부 ○○○○○○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은 공사의 직원으로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메신저를 통하여 부적절(저급)한 내용과 떠도는 야한사진을 주었으며, 이를 알게된 이해관계자(○○○)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신고하게 하는 등 공사의 명예와 대외 신뢰도를 실

추시키는 품위유지를 위반하였음.

- 이는 「복무규정」 제2조(준수사항) 제3호, 「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제7조(품위유지)를 위반하였으므로 「인사규정」 제45조(징계사유) 제4호 및 「징계규칙」 제8조(징계의 양정) 제1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(경징계: 견책)하고자 함.

Ⅲ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1. 처분요구 현황

일련 번호	관계기관	제 목	처분요구 등 종류			비 고
			신분상	행정상	재정상	
1	○○○지역본부 ○○○○○○○	직원 품위유지 위반	견책			

붙임명세

붙 임: 감사결과 처분 요구 1부. 끝.

감 사 징 계 요 구

제 목 직원 품위유지 위반

관계기관 ○○지역본부 ○○○○○○

대 상 자 국토정보직○급 ○○○

징계종류 견책

징계사유

위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은 2015.02.04.부터 2015.05.18.현재까지 ○○지역본부 ○○○○○○에서 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복무규정」 제2조(준수사항)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“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다.

「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」 제7조 (품위유지) “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럼에도 국토정보직 ○급 ○○○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메시지를 통하여 부적절(저급)한 내용과 떠도는 야한사진을 주었으며, 이를 알게 된 이해관계자(○○○)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신고하게 하는 등 공사의 명예실추와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사장(○○○장)은 「복무규정」 제2조(준수사항) 제3호(품위유지의 의무) 및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7조(품위유지)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「인사규정」 제45조(징계사유) 제4호 및 「징계규칙」 제8조(징계의 양정) 제1호에 따라 관련자를 **신분상조치(견책)**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